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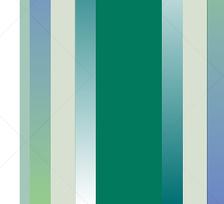


교단총회와 한국교회에 바란다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6대 의제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차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6대 의제

의제1

교회와 교역자와 보호하는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2쪽

의제2

목회자 은퇴, 지금부터 공적으로 준비합니다. / 4쪽

의제3

목회자 사례비 격차 해소를 위한 교단별 대책이 필요합니다. / 6쪽

의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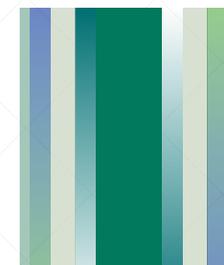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회 운영의 틀을 마련합니다. / 8쪽

의제5

헌금의 정신에 합당하게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10쪽

의제6

한국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 12쪽



교단총회와 한국교회에 바란다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6대 의제

발행일 | 2024년 9월 2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김현아

디자인 | 윤동혁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https://cemk.org>

의제 1

교회와 교역자를 보호하는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현황 및 필요성

- 부교역자의 교회 사역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의 처우 문제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교역자 청빙과 사역 환경, 교회의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날로 쌓여가지만 교회는 오랜 관행과 문화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부교역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교회 사역 전반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역자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교회의 목회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된 공동체로서의 모범과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표준동역합의서> 작성은 마땅한 일입니다.

제안 내용**

1. 교회는 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을 존중하고, 교역자는 교회의 사명과 공동체됨을 존중합니다.
2. 교회와 교역자는 사역 기간, 주중 사역 시간 및 사역 내용을 합의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이하)을 준수하며, 사역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확대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사역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3. 교회와 교역자는 사례비와 퇴직금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4. 교회와 교역자는 휴무일과 휴가일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 최소 주 1회, 가능하면 주 2회의 휴무일을 제공하며, 사역자가 정기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절기, 동절기에 1주의 휴가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5. 교회와 교역자는 동역 해지 방법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실천 방법

- 교회 내 오래된 문화 및 부교역자의 처우에 대하여 공동체 전체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지점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배포한 <한국교회 표준동역합의서>를 참고하여 교회와 교역자의 상황에 맞는 '동역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주변 교회와 교역자들이 '동역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한국교회에 건강한 동역 관계가 형성되고 교회와 교역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갑시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트렌드2024』

** 기윤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2024)』

의제 2

목회자 은퇴, 지금부터 공적으로 준비합니다.



현황 및 필요성

- 목회자 은퇴 처우 문제로 은퇴 목회자와 교인들간의 갈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 및 미자립 교회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나 목회자 모두 은퇴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향후 10년 내에 베이비 붐 시대의 목회자들이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교회와 노회, 총회가 함께 목회자들의 은퇴를 대비하여 교회와 목회자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1. 은퇴 매뉴얼 작성

- 은퇴 매뉴얼 작성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은퇴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청빙할 때 교회와 목회자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은퇴 시기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작성합니다.

2. 자립 교회의 경우 일반 성도의 기준을 따라 준비

- 은퇴를 대비해 교회와 목회자는 은급, 국민연금, 퇴직연금보험, 민

간의료보험을 준비합니다.

- 주택은 교회가 소유하여 목회자와 배우자 사망시까지 사택으로 제공합니다.

3. 소형 및 미자립 교회의 경우 노회와 총회가 함께 준비

- 총회와 노회는 모든 교회가 목회자의 국민연금, 퇴직연금보험, 민간의료보험, 주택청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되, 개별 교회나 목회자가 부담하기 힘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개별 목회자의 은퇴 준비

- 은퇴 3년 전부터 은퇴 이후의 생활과 후임 목회자 청빙을 공론화하고 준비합니다.
- 주택, 생활비 외에도 건강, 여가생활, 영성, 공동체 소속을 미리 준비합니다.

실천 방법

- 교회와 목회자는 은퇴 논의를 미루거나 금기시하지 않고 공론화해야 하며, 미리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 총회와 노회는 목회자의 은퇴 관련 준비와 논의를 의무화하고 표준 매뉴얼 제시하며 개별 교회나 목회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교회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의제 3

목회자 사례비 격차 해소를 위한 교단별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황 및 필요성

- 목회자 사례비가 개교회의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회 내 직급별/성별 사례비도 합리적 기준없이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급격한 교인 수 감소, 이중직 목회자의 증가, 신학생 지원자 감소 및 부교역자 사역 회피 등 급변하는 교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사례비 문제에 대한 교단별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안 내용

1. 목회자 사례비 현황 파악 및 격차 해소 방안 공론화

- 교회 규모별 목회자 사례비 현황 및 직급별/성별 격차 수준을 파악하되, 특별히 미자립교회 소속 목회자 월수입 대비 사례비 현황을 조사합니다.
- 목회자 사례비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비 기준 마련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공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2. 신학 교육 무상화 및 수급 조절

- 총회는 신학생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여 신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및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집니다.

- 총회 산하 신학교는 교세 현황에 맞게 신학생의 수를 조정하며, 인격과 실력을 갖춘 신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자립 교회 목회자 이중직 및 전직 지원

-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최저생계비를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중직 목회를 위한 지원 기구를 마련하고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 객관적 기준에 의거 교회로서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이웃 교회와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목회자의 전직을 지원합니다.

실천 방법

- 총회는 목회자 사례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목표 설정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총회가 제시한 지침을 따라 자립 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비 격차 해소를 위한 경비를 분담하되 개교회 차원의 지원이 아닌 노회와 총회에 납부하며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요청합니다.
- 사례비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지원책과 자구책도 함께 제시하고 실천합니다.

의제 4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회 운영의 틀을 마련합니다.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목회자와 50-60대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회 및 교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교인들의 성비와 연령의 비례성에 따라 조정하여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회의 중요 직분에 대한 견제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1. 교회 정관 제정

- 교단 헌법 정신을 교회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운영 규칙을 제정합니다.

2. 교인들의 성비와 연령의 비례성을 확보한 당회 구성 혹은 운영위원회 설치하여 당회와 권한 배분

- 여성 안수가 허용되는 교단은 장로 구성에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고, 가능한 각 연령대별로 장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여성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은 권사와 안수집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당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합니다.
- 각 연령대와 성별 비율을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권한을 위임

받아 교회의 실무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고, 당회는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3. 향존직에 대한 임기제 혹은 신임 투표 실시

- 장로, 권사, 집사는 일정한 임기를 수행한 후 직에서 물러나거나 신임 투표와 안식년을 거쳐 2차 임기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목사에 대해서는 일정 주기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실천 방법

- 교단 헌법 정신을 학습하고 헌법 정신 중 왜곡된 관행들을 고쳐나갑니다.
- 교단 헌법 정신과 모범적 이웃 교회들의 사례*를 참고하되 교회 각각의 상황에 맞는 민주적 교회 운영의 방식과 내용을 합의 합니다.
- 합의된 내용을 정관(운영 규칙)에 담아 시행하면서 미비점이나 부작용들을 고쳐나갑니다.

* 기윤실, 「교회운영의 바른 길을 모색하다」 자료집(2024)

의제 5

헌금의 정신에 합당하게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현황 및 필요성

- 교회에서 목회자나 재정 관리를 맡은 담당자가 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과오와 죄일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며, 대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 교회 재정은 목회자를 비롯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직하게 쓰여야 합니다. 재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건강한 의사결정구조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따르는 청지기적 실천이며 성도들과 세상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로 서는 길입니다.

제안 내용

1. 재정 규정 및 지표 만들기

- 예산을 수립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기준이 담긴 재정 규정(총칙 및 세칙)을 제정합니다.
-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계정과목 및 보고서(장부의 체계)를 마련합니다.

- 오류와 부정의 가능성을 줄이는 복식부기를 사용합니다.
- 재정의 책임을 분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청구인, 집행인, 감사인을 분리합니다.

2. 목회자 소득 신고하기

- 목회자는 세법에서 정한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 하늘의 시민이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합니다.

3. 감사 및 보고 실시하기

- 교회 재정이 예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보고서에 오류가 없는지,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지 등, 회계연도 동안의 교회 재정 전반에 대하여 독립된 회계 전문가를 통해 감사를 시행합니다.
- 결산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 비치 및 온라인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실천 방법

- 목회자들과 재정 담당자들을 위해 교회 재정에 대한 자세와 회계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회 재정 청지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소에도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권면합니다.
-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르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및 전문단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의제 6

한국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현황 및 필요성

-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된 지 오래이며, 2023년 기준 개신교 내 성폭력 가해자 중 약 70%는 담임목사 등 '교회 리더'로 밝혀졌습니다.*
-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 주요 교단들은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대부분 견책에서 면직 수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안 내용

1. 구체적인 성폭력 대응 방안 및 징계 절차 수립하기

- 교단별 성폭력 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정 및 개정합니다.(독립교단별 교회 협의체 내에서의 매뉴얼 제정도 필요)
- 특히 미성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그루밍 성범죄 등)에 대한 가중 처벌 방안을 수립합니다.
- 가해자에게 실정법의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끝까지 모니터링합니다.

* 한겨레, <개신교 내 성폭력 가해자 70%는 담임목사 등 '교회 리더'>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080116.html>, 2024년 8월 14일 검색

2. 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하기

- 내외부 전문 기관 및 전문가의 도움으로 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 1회성 캠페인 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개교회별 성폭력 예방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교회 성폭력 대부분이 리더와 성도 간 위계에 의한 발생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신학교 차원의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3. 교단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기구 운영하기

- 교회 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운영합니다.
- 피해자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안전한 상황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예산을 수립합니다.

실천 방법

-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및 전문단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세속규정(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징계 절차를 수립하고 성역없이 이행합니다.

** 뉴스앤조이, [거룩한 범죄자들] © 해외 교단 사례로 본 목회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2022, 11. 15
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dxno=304832, 2024년 8월 14일 검색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https://cemk.org>